

강원도의회 제308회 임시회 의원 입법 동향

◆ 강원도의회 제308회 임시회(4.6.~4.20.)에서 의결된 의원 발의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소개해 드립니다.

◆ 의안 및 심사보고서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강원도의회 의안처리시스템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강원도의회 의안처리시스템 : <https://council.gangwon.kr/minutes/bill/search/accept.do>

제308회 임시회 조례안 처리 목록

◆ 총 건 : 의원발의 7건

상임 위원회	조례안명	발의자	본회의 처리결과 (22. 04. 20)
기획행정 위원회 (1)	강원도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상화 의원	수정가결
사회문화 위원회 (3)	강원도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	정유선 의원	원안가결
	강원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권순성 의원	원안가결
	강원도인재개발원의 강원도민등에 대한 교육훈련 운영 조례안	정수진 의원	원안가결
농림수산 위원회 (2)	강원도 대기오염 경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병구 의원	원안가결
	강원도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윤지영 의원	원안가결
경제건설 위원회 (1)	강원도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윤지영 의원	원안가결

《 참고 : 조례 제정절차 등 》

- (지방자치단체 이송) : 지방의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5일 이내 이송
 - * 제308회 임시회 조례안 의결사항 집행기관 이송일 : 2022. 4. 20.(수)
- (지방자치단체장 조례안 공포) :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공포
-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의 요구) : 이의가 있으면 20일 이내 지방의회로 환부
- (재의요구 조례안 확정) : 지방의회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 찬성
- (조례 효력발생) : 공포한 날부터 20일 후 효력 발생(단, 부칙에서 시행일을 따로 정할 수 있음)
- ※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제32조

제308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안 주요내용 소개

■ 강원도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표발의 : 심상화 의원(교육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비례)
- 공동발의 : 신도현 의원(부의장 · 국민의힘 · 홍천2), 김진석 의원(사회문화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평창2), 김혁동 의원(교육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태백2), 박인균 의원(기획행정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강릉2), 원태경 의원(사회문화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춘천3), 이종주 의원(교육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춘천2), 최종희 의원(사회문화위원회 · 국민의힘 · 비례), 함중국 의원(농림수산위원회 · 국민의힘 · 횡성2), 허민영 의원(기획행정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비례), 허소영 의원(기획행정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춘천5)

강원도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함에 따라 강원도 지역치안협의회 사무를 강원도에서 주관하도록 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한 사항을 보완함으로써 강원도 지역치안협의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고자 「강원도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됐다. 본 조례안에 따르면 강원도 지역치안협의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였고, 간사는 강원도에서 강원도 지역치안협의회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심상화 의원



신도현 의원



김진석 의원



김혁동 의원



박인균 의원



원태경 의원



이종주 의원



최종희 의원



함중국 의원



허민영 의원



허소영 의원

■ 강원도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

- 대표발의 : 정유선 의원(교육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비례)
- 공동발의 : 김혁동 의원(교육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태백2), 조형연 의원(경제건설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인제), 최종희 의원(사회문화위원회 · 국민의힘 · 비례), 허민영 의원(기획행정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비례)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디지털성범죄로부터 강원도민을 보호하고,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를 보호·지원하여 인권증진에 이바지하고자 「강원도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이 발의됐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도지사는 디지털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강원도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디지털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디지털성범죄 예방을 위한 연구·조사·교육 및 예방 프로그램 개발·보급,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디지털성범죄를 위한 신고체계 구축·운영, 디지털성범죄 가해자의 행동 교정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운영, 디지털성범죄 예방 교육 전문 인력 양성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 ③ 도지사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상담, 치료 및 긴급보호 지원, 사법 절차 상 필요한 조력 제공, 법률구조 연계, 촬영물등의 삭제지원 연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사후 모니터링 및 자조모임 등 회복프로그램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정유선 의원



김혁동 의원



조형연 의원



최종희 의원



허민영 의원

■ 강원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표발의 : 권순성 의원(사회문화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원주6)
- 공동발의 : 장덕수 의원(사회문화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 원주4), 김병석 의원(사회문화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원주4),
 김수철 의원(사회문화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화천), 김진석 의원(경제건설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정선2),
 정수진 의원(교육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비례), 주대하 의원(사회문화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속초1),
 최종희 의원(사회문화위원회 · 국민의힘 · 비례)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를 도입하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강원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됐다. 본 조례안에 따르면 “장애인 건강 주치의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란 중증장애인이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장애인 건강 주치의로 등록 신청한 의사를 일반건강관리, 주장애폐리 또는 통합관리 건강 주치의 등으로 선택하여 만성질환이나 장애 관련 건강상태 등을 지속적이고 포괄적으로 관리하는 활동을 말하며 도지사는 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하여 서비스 관련 홍보 및 정보 제공,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본인 부담금 지원, 의원등에 대한 서비스에의 참여 독려,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원등에 대한 이용편의 시설 설치 지원 등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권순성 의원



장덕수 의원



김병석 의원



김수철 의원



김진석 의원



정수진 의원



주대하 의원



최종희 의원

■ 강원도인재개발원의 강원도민등에 대한 교육훈련 운영조례안

- 대표발의 : 정수진 의원(교육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비례)
- 공동발의 : 장덕수 의원(사회문화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 원주4), 권순성 의원(사회문화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원주6),
 김병석 의원(사회문화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원주4), 김수철 의원(사회문화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화천),
 김진석 의원(경제건설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정선2), 주대하 의원(사회문화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속초1),
 최종희 의원(사회문화위원회 · 국민의힘 · 비례)

강원도인재개발원이 강원도민등에게 실시하는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강원도 인재개발원의 강원도민등에 대한 교육훈련 운영 조례안」이 발의됐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강원도인재개발원의 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강원도민등에 대한 교육훈련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 · 시행해야 한다. ② 원장은 강원도민에게 국 · 도정 과제와 시책 등의 공유를 위한 교육, 사회적 책무에 대한 인식 제고 및 공익 활동 확산을 위한 교육, 지방자치에 대한 의식 및 자율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 취약계층의 취업 경쟁력 증진을 위한 교육 등의 교육훈련을, 관계 기관 종사자에게 직무역량 강화 교육훈련을 제공할 수 있다. ③ 원장은 강원도민 및 관계 기관 종사자 중에서 원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교육훈련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무상으로 교육훈련을 제공받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교재비, 실습 체험비, 현장 견학비, 취약계층 교육훈련을 위한 숙식비 등의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정수진 의원



장덕수 의원



권순성 의원



김병석 의원



김수철 의원



김진석 의원



주대하 의원



최종희 의원

강원도 대기오염 경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표발의 : 박병구 의원(농림수산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원주1)
- 공동발의 : 김혁동 의원(교육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태백2)

거주 인구의 급격한 변동이 있는 지역 등 도시대기 오염도에 유의미한 변화가 있는 경우에 이러한 변화를 적극적으로 인지하여 대기오염 경보가 발령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자 「강원도 대기오염 경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됐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도지사는 신속 · 정확한 경보를 발령하기 위하여 도시대기측정망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 시행한다. ② 관리계획에는 도시대기측정소의 개수, 연한 등의 현황, 신설 · 이전 · 폐쇄, 운영 · 유지 · 보수 및 대기오염 데이터 관리 등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도지사는 도시대기측정소의 신설 · 이전 계획을 수립할 때 거주 인구의 급격한 변동이 있는 지역이나 새로운 배출원으로 인해 도시대기 오염도에 유의미한 변화가 있는 지역을 우선대상지역으로 고려해야 한다.



박병구 의원



김혁동 의원

강원도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 대표발의 : 윤지영 의원(경제건설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춘천1)
- 공동발의 : 김진석 의원(사회문화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평창2), 박윤미 의원(기획행정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원주3), 신명순 의원(농림수산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영월2), 이종주 의원(교육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춘천2)

현대인들의 일과 삶의 균형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생활 속 정원 및 정원문화를 조성 · 진흥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원문화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강원도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됐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정원문화 조성 · 진흥 및 정원문화산업 진흥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거나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강원도정원문화진흥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정원문화가 조성 · 진흥될 수 있도록 각종 정원의 조성, 생활형정원 조성 · 지원, 정원문화에 관한 교육 · 홍보, 도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캠페인 및 시민정원사 양성 · 활동 지원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정원문화산업의 발굴 및 진흥을 위하여 정원에 이용되는 식물 및 재료 등의 조사 · 수집 · 보급 및 관리, 정원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기술동향 조사 및 산학연 공동 연구, 정원에 관한 기술지도 및 교육, 정원 관련 창업 지원, 국내외 정원에 관한 정보교류 및 협력, 정원에 관한 행사, 강연회 및 박람회 개최, 정원에 관한 경연대회 및 시상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도민의 여가생활 향상과 정원문화 진흥 및 정원산업 발전을 위하여 국내외의 정원박람회를 개최할 수 있다.



윤지영 의원



김진석 의원



박윤미 의원



신명순 의원



이종주 의원

■ 대표발의 : 윤지영 의원(경제건설위원회·더불어민주당·춘천1)
■ 공동발의 : 김진석 의원(사회문화위원회·더불어민주당·평창2), 나일주 의원(경제건설위원회·더불어민주당·정선2),
 심영미 의원(교육위원회·국민의힘·비례), 윤석훈 의원(기획행정위원회·더불어민주당·평창1),
 조성호 의원(경제건설위원회·더불어민주당·원주7), 허민영 의원(기획행정위원회·더불어민주당·비례)

■ 대표발의 : 윤지영 의원(경제건설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춘천1)
 ■ 공동발의 : 김진석 의원(사회문화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평창2), 나일주 의원(경제건설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정선2),
 심영미 의원(교육위원회 · 국민의힘 · 비례), 윤석훈 의원(기획행정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평창1),
 조성호 의원(경제건설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원주7), 허민영 의원(기획행정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비례)

■ 대표발의 : 윤지영 의원(경제건설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춘천1)
 ■ 공동발의 : 김진석 의원(사회문화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평창2), 나일주 의원(경제건설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정선2),
 심영미 의원(교육위원회 · 국민의힘 · 비례), 윤석훈 의원(기획행정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평창1),
 조성호 의원(경제건설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원주7), 허민영 의원(기획행정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비례)

■ 대표발의 : 윤지영 의원(경제건설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춘천1)
 ■ 공동발의 : 김진석 의원(사회문화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평창2), 나일주 의원(경제건설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정선2),
 심영미 의원(교육위원회 · 국민의힘 · 비례), 윤석훈 의원(기획행정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평창1),
 조성호 의원(경제건설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원주7), 허민영 의원(기획행정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비례)

■ 대표발의 : 윤지영 의원(경제건설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춘천1)
 ■ 공동발의 : 김진석 의원(사회문화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평창2), 나일주 의원(경제건설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정선2),
 심영미 의원(교육위원회 · 국민의힘 · 비례), 윤석훈 의원(기획행정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평창1),
 조성호 의원(경제건설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원주7), 허민영 의원(기획행정위원회 · 더불어민주당 · 비례)

강원도 내 착한가격업소 지원과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착한가격업소의 안정적인 운영 기반 마련을 통하여 지역물가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강원도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됐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도지사는 착한가격업소의 가격안정을 위하여 착한가격업소 표찰 교부, 각종 소모품과 기자재 구입비, 쓰레기 봉투 지원, 상하수도료 등의 요금 지원 및 소규모 시설개선과 안전점검 등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매월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착한가격업소 운영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외부공개가 필요한 경우에 행정안전부 착한가격업소 홈페이지에 관련 내용을 게재해야 한다.



윤지영 의원



김진석 의원



나일주 의원



심영미 의원



윤석훈 의원



조성호 의원



허민영 의원